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159
----------	------

제출년월일 : 2010. 06.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시관내의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4조~제10조)
- 나. 공간정보 자료관리(안 제11조~제13조)
- 다. 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안 제14조~제20조)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기타 참고자료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덧붙임:
1.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조례안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

- 소규모 공공하수도 및 차집관거의 철저한 점검 및 수질관리
-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및 주민 환경의식 개선

□ 현황

-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물현황 대향산 등 37개소
 - 1일 처리용량 50톤이상 500톤미만 14개소
 - 1일 처리용량 50톤미만 23개소
- ※ 37개소 1일 총 처리용량 2,280톤
- 충주, 교현천 우수토실 및 차집관거 맨홀102개 (관로26.1Km)

□ 추진실적

- 주기적인 관리 및 순회점검 (주/3회이상) 2,775회
 - 기계시설 및 모터 수선교체 25건
-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BOD등 6개 항목)
 - 50톤 ~ 500톤(14개소) 350회(주/1회)
 - 50톤이하(23개소) 138회(월/1회)
- 슬러지 준설(분기1회) 4회

□ 향후 추진계획

- 소규모 공공하수도 순회점검 (주/3회) 2010. 7 ~ 12
-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주간, 월간/ 1회이상
- 하수슬러지 준설 (하반기 2회이상) 2010. 7 ~ 12
- 우수토실 및 차집관거 순회점검 (9회) 일/1회이상

- 1,000분의 1 축척도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시스템의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와 시설물을 시공 또는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10.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11. "도시개발사업"이란 공단조성, 택지조성, 도로, 지하시설물 및 지상시설물 구축사업을 말한다.

제3조 (공간정보의 구축·활용) ①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는 각종 도시 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시 충주시 공간정보구축지침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시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중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료의 공동활용 및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2장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위원회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간 공간정보 관련사업 협조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손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작성) 현업부서의 담당자(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이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사용
2. 시설물의 위치·심도·환경·관종·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할 것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할 것

제4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14조 (관리책임자) ① 주전산기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관리하고 단말기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공간정보 자료관리

제11조(업무지정) ① 총괄부서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산하 공간정보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3. 시스템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4.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표준화
 5. 공간정보 관련 자료의 조사, 구축, 제공 등
 6.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7. 지상·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8. 그 밖의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현업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② 현업부서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구축 및 개발행위 사업 추진시 공간정보구축
 2.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입력관리

제12조(자료의 입력관리) ① 총괄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 자료의 갱신요인(추가,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간정보 업무관련 총괄부서장과 현업부서장

2.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3.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교수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류되었을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④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 통합관리)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상호협약을 통해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도로굴착업무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은 총괄부서에서 주관하고 부서 및 각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시설물도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제공

제18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충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국가보안업무 적정성 여부
4. 그 밖의 업무추진상 지장 초래 여부

제19조(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목적외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자료제공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사업자번호	
	주소(연락처)			
사용용도				
자료제공신청내용	자료종류	① 수치지형도 ② 도로명기본지도 ③ 항공사진자료		
	위치			
	축척		수량	
	제공형태	① 도면 ② 전산자료 ③ 그 밖의 방법()		
<p>「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이행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p> <p>충주시 장귀하</p>				
비고				

5.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100분의 50
6. 시민편의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의 전산화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2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자료 중 지하시설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 등) ① 시장은 제공된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공간정보제공 승인시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 발행 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용중에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가 사용중에 손상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자료를 다시 제공할 수 있다.

⑤ 공간정보 복제시 필요한 디스켓, 자기테이프, 광디스크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 등 감면)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전액면제
3. 정보이용목적이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을 말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이하 “클린에너지파크”라 한다)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란 체육시설, 친환경기술정보센터 및 야외단지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클린에너지파크에 반입하는 폐기물은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한다.

제5조(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의 출입)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등) ① 클린에너지파크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